

#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·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운영위원회 제안)

의안 번호	2022-40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2. 3. .

발 의 자: 운영위원장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·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강서구의회의 의안, 쟁송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입법·법률 고문 제도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입법·법률 고문의 회의 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토록 개정  
(안 제8조제2항)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1조 ~ 제9조, 제11조 ~ 제13조)

4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」 제8조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」 제39조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·법률 고문 운영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·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·법률 고문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입법·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·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① 입법·법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
2.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
3.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·처리,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의 자문
4. 의정 관련 법률 사안의 자문
5.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 관련 쟁송(爭訟) 사건의 소송 수행

② 입법·법률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

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.

③ 입법·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(爭訟)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.

제3조(정원) 입법·법률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.

제4조(위촉) ① 입법·법률 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, 그 밖에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.

② 입법·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법·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.

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·법률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(별지 제1호서식)를 받은 후 위촉장(별지 제2호서식)을 교부한다.

제5조(해촉) 의장은 입법·법률 고문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
2.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준 경우
4. 입법·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5. 정원의 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

제6조(임기) 입법·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의장은 입법·법률 사안과 쟁송(爭訟) 사건의 소송 수행을

협의를 위하여 입법·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 
제8조(고문료 등) ① 입법·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고문료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·법률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한다.

1.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

2.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 문제 협의

제9조(소송 수입료 등) 입법·법률 고문이 수입한 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승낙서

본인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·법률 고문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·법률 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인)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귀하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## 위 축 장

귀하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·법률 고문으로 위촉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

**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」 제8조**

제8조(고문료)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(부가가치세 별도)의 월정고문료를 지급한다. (개정 2020.5.28.)

**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」 제39조**

제39조(소송비용)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사례금,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제1항의 소송비용의 지급 시 회계의 구분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무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별표1의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 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50,000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.